

# 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,206,167,891	156,185,037
일반회계	4,626,606,020	138,798,181
특별회계	579,561,871	17,386,856
기타특별회계	579,561,871	17,386,856
소방특별회계	202,001,513	6,060,04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90,074,288	8,702,229
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	12,715,225	381,457
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27,755,000	832,65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10,176,000	305,280
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	36,839,845	1,105,195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,088,67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